양식 제39 (제70조 관련)

의약품

의약부외품 제조판매 신고서

화장품

|  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제조판매업의 허가 종류 | | |  | | |
| 제조판매업 허가번호 및 연월일 | | |  | | |
| 명칭 | 일반 명칭 | |  | | |
| 판매 명칭 | |  | | |
| 성분 및 분량 또는 본질 | | |  | | |
| 제조 방법 | | |  | | |
| 용법 및 용량 | | |  | | |
| 효능 또는 효과 | | |  | | |
| 저장방법 및 유효기간 | | |  | | |
| 규격 및 시험방법 | | |  | | |
| 제조 판매하는 품목의 제조소 | | 명칭 | 소재지 | 허가, 인정 또는 등록구분 | 허가, 인정 또는 등록번호 |
|  |  |  |  |
| 원약 제조소 | | 명칭 | 소재지 | 허가, 인정 또는 등록구분 | 허가, 인정 또는 등록번호 |
|  |  |  |  |
| 비고 | | |  | | |

의약품

위와 같이, 의약부외품의 제조판매 신고를 합니다.

화장품

년 월 일

주소 (법인은 주요 사무소의 소재지)

성명 (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 성명)

독립행정법인 의약품의료기기 종합기구 이사장 귀하

도도부현 지사

(주의)

1. 용지 크기는 A4로 할 것.
2. 이 신고서는 정/부 2통을 제출할 것.
3. 글자는 먹, 잉크 등을 사용하여 명확하게 기재할 것.
4. 제조판매업의 허가의 종류란에는, 법 제12조 제1항에 열거하는 허가의 종류 중 해당하는 것 또는 약국제조판매의약품 제조판매업 허가로 기재할 것.